

FTE(전일제 환산기준)의 정의 및 적용

□ (정의) FTE는 美 회계감사원(GAO)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“투입 노동력”의 측정 방법

- FTE(Full-Time Equivalent)는 일정기간 동안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제 노동자 수로 측정하는 방법
 - Headcount 방식은 일하는 사람 수(자연인 수)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 FTE와 구별됨
- (계산 방식) 1년간 총 노동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‘법정 연간 근로시간’(미국의 경우 40시간×52주=2,080시간)으로 나눠 줌
 - 예를 들어, 한 부서에 속한 모든 근로자들이 2014년 한 해 동안 근무한 총 시간이 13,014시간이면 $13,014 \div 2,080 = 6.3$ FTEs

□ (배경) 공공부문의 인건비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도입

- 과거의 정원관리 방식은 한 기관이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최대치를 제한받는 제도
 -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다가 보고기한이 오면 초과로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해 정원을 맞추는 불법 관행이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 낭비를 막기가 어려웠음
- 이에 美 OMB(관리예산처;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)은 연방정부 각 부처에 FTE 상한선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편성
 - 예를 들어 500 FTE를 부여받은 기관은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500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. 혹은 ‘400명의 정규직 근로자 + 200명의 시간제 근로자(4시간 근로시)*’를 채용할 수도 있음

* 200명 시간제 근로자 = 0.5 FTE × 200명 = 100 FTE

□ (장점) FTE는 각 기관에는 인건비 운영과 인력 채용에 자율성을 부여하고, 중앙정부에는 예산 집행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

- 미국 연방 부처의 경우 부여받은 한 회계연도 당 FTE 상한선 내에서 자유롭게 인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인력 채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
 - 연방정부는 이전과 달리, 각 부처가 초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편법을 쓰지 않게 되어 인건비 낭비를 막을 수 있음
- 영국의 경우 1999년부터 공무원 국가공무원수를 Headcount 방식과 FTE방식(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환산한 공무원 수 + 전일제 공무원 수) 모두 사용해 통계 관리
 -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교사의 인력관리에 있어 FTE 개념을 도입
- 미국, 호주 등에서는 FTE가 고용정책 평가에도 이용됨. 시간제 또는 기간제로 인해서 일자리 효과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
 -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및 고용상황에 대응하여 2009년 2월 미국 경제회복과 재투자법(ARRA: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)을 제정. 이때 ARRA 재원의 집행으로 유지·창출되는 일자리를 FTE 기준으로 집계하도록 함
 - 호주의 경우에도 재정지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규모는 상시고용인원(FTE)을 기본단위로 추정

□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유연근무제 도입이 논의되며 FTE의 개념이 언급된 바 있음

- 2010년 당시 공공부문의 유연근무제 도입, 직무공유제(Job Sharing) 등이 논의되며 공공기관의 인원 관리기준을 단순히 투입된 노동자의 수로 판단하는 '정원'의 개념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는 FT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
 - 관세청은 2010년 '시간제 근무' 시범 실시에서 정원을 산정·관리함에 있어 FTE를 적극 관리하여 시간제근무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 제시(2010.4)
 - 보건복지부는 '경제혁신 3개년 계획' 현장 점검(2014.6.5)에서 종합병원의 병상당 의료인력 산정 시 인원 수를 FTE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건의

-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FTE의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
 - SK C&C는 대가(용역) 체계에 적용하는 기본 단가를 맨먼스(man-month; 한 사람의 1개월간 작업량) 방식에서 'FTE(Full Time Equivalent)'라는 방식으로 전환. 맨먼스 방식이 기술자 1인에 대한 과금이라면 FTE는 노동력 자체에 대한 과금으로, SK C&C는 유연하게 인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선택(디지털타임스, 2013.12.25.)
- 여성,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,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 등을 위해 FTE 개념의 도입이 필요
 -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서도 FTE 개념으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